진본확인 미검증 정부진본확인센터

2024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: 기본내역 [건강보험료]

(조회기간 : 2024년 01 ~ 12월)

■ 가입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나형동	810114-*******

■ 건강보험료(직장가입자) 내역 (단위:원)

월별	보수월액(고지금액)		소득월액(납부금액)	
	건강보험료①	장기요양보험료②	건강보험료③	장기요양보험료④
01월	222,260	28,780	0	0
02월	222,260	28,780	0	0
03월	222,260	28,780	0	0
04월	306,270	39,610	0	0
05월	306,270	39,600	0	0
06월	306,270	39,600	0	0
07월	264,510	34,250	0	0
08월	264,510	34,250	0	0
09월	264,510	34,250	0	0
10월	264,510	34,250	0	0
11월	264,510	34,250	0	0
12월	264,510	34,250	0	0
연말정산	0	0		
합계	3,172,650	410,650	0	0
총합계				3,583,300

1. 보수월액 보험료 :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한 금액이며,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소득공제대상금액은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입니다. (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에는 합산한 보험료가 제공됩니다.)
2. 소득월액 보험료 : 연간 납부한 금액이 제공됩니다.

일련번호 : 20250120-97547046

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

- 본 증명서류는『소득세법』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[국민연금보험료]

(조회기간 : 2024년 01~12월)

■ 가입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나형동	810114-*******

■ 국민연금보험료 내역 (단위:원)

월별	직장가입자 고지금액	지역가입자 등 납부금액
01월	265,500	0
02월	265,500	0
03월	265,500	0
04월	265,500	0
05월	265,500	0
06월	265,500	0
07월	277,650	0
08월	277,650	0
09월	277,650	0
10월	277,650	0
11월	277,650	0
12월	277,650	0
직장가입자 소급고지금액	0	
추납보험료 납부금액		0
실업크레딧 납부금액		0
합계	3,258,900	0
총합계		3,258,900

1. 직장가입자 고지금액 : 국민연금공단이 고지한 금액이며,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소득공제대상금액은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입니다. (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 합산한 보험료가 제공됩니다.)

※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근로자는 해당 지원금이 공제된 금액으로 월별 고지금액이 제공되며, 지원금 공제 시점에 따라 월별 고지금액이 마이너스(-)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.

2. 지역가입자 · 추납보험료 · 실업크레딧 납부금액은 연간 납부한 금액이 제공됩니다.

일련번호 : 20250120-97547046

국 세 청
National Tax Service

- 본 증명서류는『소득세법』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: 기본(지출처별)내역
[보장성 보험,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]

(조회기간 : 2024년 01 ~ 12월)

■ 계약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나형동	810114-*******

■ 보장성보험(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)납입내역 (단위:원)

종류	상 호 / 사업자번호 / 종피보험자1(수익자)		보험종류 / 증권번호 / 종피보험자2(수익자)		주피보험자 / 종피보험자3(수익자)		납입금액 계
보장성	동양생명보험 (주)		(무)수호천사행복플랜Ⅱ보험				1,252,728
	202-81-38251		255954*****		810114-*******	나형동	
보장성	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		M-Basket1304생활케어프리				1,196,700
	116-81-03752		605572*****		810114-*******	나형동	
보장성	현대해상화재보험 (주)		무배당굿앤굿어린이CI보험(Hi140				483,840
	102-81-32035		L01419*****		150120-*******	나태양	
	840413-*******	임혜연					
보장성	삼성화재해상보험 (주)		애니카다이렉트_개인용				409,420
	202-81-45617		124K15*****		810114-*******	나형동	
인별합계금액							**3,342,688**

1. 공제 대상 :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(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)
2. 공제 한도 : 100만원

일련번호 : 20250120-97547046

국 세 청
National Tax Service

- 본 증명서류는『소득세법』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: 기본(지출처별)내역
[보장성 보험,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]

(조회기간 : 2024년 01 ~ 12월)

■ 계약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나문영	520809-*******

■ 보장성보험(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)납입내역 (단위:원)

종류	상 호 / 사업자번호 / 종피보험자1(수익자)	보험종류 / 증권번호 / 종피보험자2(수익자)	주피보험자 / 종피보험자3(수익자)		납입금액 계
보장성	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	(무) NH프리미어운전자보험1704			784,002
	104-86-39719	319034*****	520809-*******	나문영	
보장성	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	(무) 리치팜생활안심보험2001			596,748
	104-86-39719	319069*****	520809-*******	나문영	
보장성	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	KB다이렉트(인터넷)업무용			625,580
	202-81-48370	202474*****	520809-*******	나문영	
보장성	에이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	무배당 Super 큰병이			794,928
	101-86-67365	411003*****	520809-*******	나문영	
인별합계금액					**2,801,258**

1. 공제 대상 :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(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)
2. 공제 한도 : 100만원

일련번호 : 20250120-97547046

국 세 청
National Tax Service

- 본 증명서류는『소득세법』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: 기본(지출처별)내역
[보장성 보험,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]

(조회기간 : 2024년 01 ~ 12월)

■ 계약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강영숙	541014-*******

■ 보장성보험(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)납입내역 (단위:원)

종류	상 호 / 사업자번호 / 종피보험자1(수익자)		보험종류 / 증권번호 / 종피보험자2(수익자)		주피보험자 / 종피보험자3(수익자)		납입금액 계
보장성	동양생명보험 (주)		(무)수호천사실손의료비보장(갱				1,830,620
	202-81-38251		109002*****		541014-*******	강영숙	
보장성	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		더좋아진스마트페이NH종신보험				1,581,250
	104-86-39723		318122*****		541014-*******	강영숙	
인별합계금액							3,411,870

1. 공제 대상 :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(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)
2. 공제 한도 : 100만원

일련번호 : 20250120-97547046

국 세 청
National Tax Service

- 본 증명서류는『소득세법』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: 기본(지출처별)내역 [의료비]

(조회기간 : 2024년 01 ~ 12월)

■ 환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나형동	810114-*******

■ 의료비 지출내역 (단위:원)

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지출금액 계
0-92-37*	연*****	일반	95,100
0-10-98*	태*****	일반	195,300
4-62-00*	으*****	안경 또는 콘텍트렌즈 구입비용	31,900
9-43-00*	으*****	안경 또는 콘텍트렌즈 구입비용	27,000
3-12-02*	서*****	일반	27,400
0-09-02*	연*****	일반	172,200
의료비 인별합계금액			**490,000**
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			**58,900**
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			**0**
인별합계금액			**548,900**

1. 공제 대상 :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(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
   ※ 미용 목적 성형(교정)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(보약) 구입비용,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'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'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,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
2. 공제 한도 : 본인・장애인・65세 이상 자・6세 이하자・건강보험 산정특례자・난임시술비(한도 없음) 그 외 부양가족(700만원)
   ※ 시력보정용 안경(콘택트렌즈)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,
  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

일련번호 : 20250120-97547046

국 세 청
National Tax Service

- 본 증명서류는『소득세법』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: 기본(지출처별)내역 [의료비]

(조회기간 : 2024년 01 ~ 12월)

■ 환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나문영	520809-*******

■ 의료비 지출내역 (단위:원)

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지출금액 계
3-90-73*	가*****	폐업의료비(비보험제외)	9,500
0-90-42*	서*****	일반	51,200
3-28-12*	건*****	일반	41,400
3-82-03*	대*****	일반	1,232,910
0-96-02*	안*****	일반	8,600
4-82-04*	대*****	일반	97,220
8-19-46*	세*****	일반	7,800
4-96-06*	이*****	일반	3,400
3-06-19*	행*****	일반	13,400
1-82-03*	계*****	일반	25,400
4-05-46*	삼*****	일반	6,400
0-96-02*	덕*****	일반	1,900
0-82-04*	의*****	일반	6,500
0-90-40*	성*****	일반	27,400

1. 공제 대상 :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(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
   ※ 미용 목적 성형(교정)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(보약) 구입비용,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'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'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,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
2. 공제 한도 : 본인 · 장애인 · 65세 이상 자 · 6세 이하자 ·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· 난임시술비(한도 없음) 그 외 부양가족(700만원)
   ※ 시력보정용 안경(콘택트렌즈)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,
  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

일련번호 : 20250120-97547046

국 세 청
National Tax Service

- 본 증명서류는『소득세법』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: 기본(지출처별)내역 [의료비]

(조회기간 : 2024년 01 ~ 12월)

■ 환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나문영	520809-*******

■ 의료비 지출내역 (단위:원)

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지출금액 계
3-11-75*	메*****	일반	18,440
0-90-23*	가*****	일반	4,800
3-62-00*	사*****	일반	138,900
7-96-00*	이*****	일반	5,148,600
9-91-00*	성*****	일반	4,900
6-13-16*	혜*****	일반	14,300
1-30-01*	제*****	일반	4,600
의료비 인별합계금액			**6,867,570**
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			**0**
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			**0**
인별합계금액			**6,867,570**

1. 공제 대상 :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(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
   ※ 미용 목적 성형(교정)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(보약) 구입비용,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'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'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,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
2. 공제 한도 : 본인 · 장애인 · 65세 이상 자 · 6세 이하자 ·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· 난임시술비(한도 없음) 그 외 부양가족(700만원)
   ※ 시력보정용 안경(콘택트렌즈)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,
  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

일련번호 : 20250120-97547046

국 세 청
National Tax Service

- 본 증명서류는『소득세법』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: 기본(지출처별)내역 [의료비]

(조회기간 : 2024년 01 ~ 12월)

■ 환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임혜연	840413-*******

■ 의료비 지출내역 (단위:원)

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지출금액 계
0-20-49*	휴*****	일반	18,600
0-82-00*	연*****	일반	474,940
0-92-41*	권*****	일반	3,700
0-20-39*	은*****	일반	33,000
0-19-81*	올*****	일반	2,800
0-90-77*	참*****	일반	5,200
0-20-74*	원*****	일반	5,100
0-92-55*	약*****	일반	32,500
1-90-47*	한*****	일반	24,600
0-92-04*	우*****	일반	5,200
7-17-57*	열*****	일반	4,690
1-42-00*	비*****	일반	181,100
3-15-64*	3*****	일반	13,200
2-21-00*	3*****	일반	3,400

1. 공제 대상 :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(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
   ※ 미용 목적 성형(교정)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(보약) 구입비용,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'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'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,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
2. 공제 한도 : 본인・장애인・65세 이상 자・6세 이하자・건강보험 산정특례자・난임시술비(한도 없음) 그 외 부양가족(700만원)
   ※ 시력보정용 안경(콘택트렌즈)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,
  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

일련번호 : 20250120-97547046

국 세 청
National Tax Service

- 본 증명서류는『소득세법』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: 기본(지출처별)내역 [의료비]

(조회기간 : 2024년 01 ~ 12월)

■ 환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임혜연	840413-*******

■ 의료비 지출내역 (단위:원)

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지출금액 계
6-91-00*	연*****	일반	52,000
4-51-00*	시*****	일반	17,000
3-59-00*	튼*****	일반	30,600
9-43-00*	으*****	안경 또는 콘텍트렌즈 구입비용	41,000
0-14-01*	밝*****	일반	17,300
8-97-01*	3*****	일반	89,500
6-98-82*	불*****	일반	1,355,300
6-90-01*	불*****	일반	30,800
의료비 인별합계금액			**2,400,530**
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			**41,000**
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			**0**
인별합계금액			**2,441,530**

1. 공제 대상 :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(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
   ※ 미용 목적 성형(교정)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(보약) 구입비용,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'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'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,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
2. 공제 한도 : 본인・장애인・65세 이상 자・6세 이하자・건강보험 산정특례자・난임시술비(한도 없음) 그 외 부양가족(700만원)
   ※ 시력보정용 안경(콘택트렌즈)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,
  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

일련번호 : 20250120-97547046

국 세 청
National Tax Service

- 본 증명서류는『소득세법』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: 기본(지출처별)내역 [의료비]

(조회기간 : 2024년 01 ~ 12월)

■ 환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나태양	150120-*******

■ 의료비 지출내역 (단위:원)

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지출금액 계
7-91-63*	참*****	일반	6,500
0-82-00*	연*****	일반	193,700
0-92-41*	권*****	일반	115,600
0-92-00*	삼*****	일반	5,200
0-19-81*	올*****	일반	126,490
1-90-47*	한*****	일반	59,800
7-17-57*	열*****	일반	2,900
4-18-44*	참*****	일반	5,200
5-82-00*	푸*****	일반	881,430
3-15-64*	3*****	일반	2,800
2-21-00*	3*****	일반	7,700
4-51-00*	시*****	일반	34,000
8-28-25*	애*****	일반	6,500
9-93-01*	연*****	일반	11,000

1. 공제 대상 :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(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
   ※ 미용 목적 성형(교정)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(보약) 구입비용,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'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'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,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
2. 공제 한도 : 본인・장애인・65세 이상 자・6세 이하자・건강보험 산정특례자・난임시술비(한도 없음) 그 외 부양가족(700만원)
   ※ 시력보정용 안경(콘택트렌즈)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,
  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

일련번호 : 20250120-97547046

국 세 청
National Tax Service

• 본 증명서류는『소득세법』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•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: 기본(지출처별)내역 [의료비]

(조회기간 : 2024년 01 ~ 12월)

■ 환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나태양	150120-*******

■ 의료비 지출내역 (단위:원)

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지출금액 계
8-97-01*	3*****	일반	6,500
0-65-00*	닥*****	일반	10,100
의료비 인별합계금액			**1,475,420**
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			**0**
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			**0**
인별합계금액			**1,475,420**

1. 공제 대상 :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(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
   ※ 미용 목적 성형(교정)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(보약) 구입비용,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'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'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,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
2. 공제 한도 : 본인・장애인・65세 이상 자・6세 이하자・건강보험 산정특례자・난임시술비(한도 없음) 그 외 부양가족(700만원)
   ※ 시력보정용 안경(콘택트렌즈)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,
  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

일련번호 : 20250120-97547046

국 세 청
National Tax Service

• 본 증명서류는『소득세법』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•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: 기본(지출처별)내역 [의료비]

(조회기간 : 2024년 01 ~ 12월)

■ 환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강영숙	541014-*******

■ 의료비 지출내역 (단위:원)

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지출금액 계
3-90-73*	가*****	폐업의료비(비보험제외)	1,800
0-90-42*	서*****	일반	72,900
3-28-12*	건*****	일반	1,000
4-82-04*	대*****	일반	174,640
0-90-58*	성*****	일반	145,900
의료비 인별합계금액			**396,240**
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			**0**
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			**0**
인별합계금액			**396,240**

1. 공제 대상 :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(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
   ※ 미용 목적 성형(교정)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(보약) 구입비용,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'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'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,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
2. 공제 한도 : 본인・장애인・65세 이상 자・6세 이하자・건강보험 산정특례자・난임시술비(한도 없음) 그 외 부양가족(700만원)
   ※ 시력보정용 안경(콘택트렌즈)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,
  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

일련번호 : 20250120-97547046

국 세 청
National Tax Service

• 본 증명서류는『소득세법』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•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: 기본내역
[실손의료보험금]

(조회기간 : 2024년 01~12월)

■ 피보험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임혜연	840413-*******

■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 (단위:원)

상호	상품명	보험계약자		수령금액 계
사업자번호	계약(증권)번호	수익자		
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	무배당HOW-MUCH하나	840413-*******	임혜연	1,896,690
104-81-30770	216520*****	840413-*******	임혜연	
인별합계금액				1,896,690

1.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,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공제받아야 합니다.

일련번호 : 20250120-97547046

국 세 청
National Tax Service

- 본 증명서류는『소득세법』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: 기본내역
[실손의료보험금]

(조회기간 : 2024년 01~12월)

■ 피보험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나태양	150120-*******

■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 (단위:원)

상호	상품명	보험계약자		수령금액 계
사업자번호	계약(증권)번호	수익자		
현대해상화재보험 (주)	무배당굿앤굿어린이CI보험(Hi140	810114-*******	나형동	21,100
102-81-32035	L01419*****	810114-*******	나형동	
인별합계금액				21,100

1.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,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공제받아야 합니다.

일련번호 : 20250120-97547046

국 세 청
National Tax Service

- 본 증명서류는『소득세법』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: 기본(지출처별)내역 [교육비]

(조회기간 : 2024년 01 ~ 12월)

■ 학생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나태양	150120-*******

■ 교육비 지출내역 (단위:원)

교육비구분	학교명	사업자번호	구분	지출금액계
초등학교	***초등학교	**1-83-00***	일반교육비	51,760
일반교육비 합계금액				**51,760**
현장학습비 합계금액				**0**

1. 아이행복(사랑)카드 : 아이행복(사랑)카드를 이용하여 지급한 보육료 중 부모부담금액(정부지원금 제외)이며, 추가로 지급한 보육료가 있는 경우 해당 보육시설에서 '교육비납입증명서'를 발급받아 공제 가능합니다.
2. 대학(원)교육비 : 등록금 등 교육비에서 학자금대출과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제공합니다.

※ 2017년 귀속부터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(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학자금 대출 중 등록금 대출에 한함)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며, 대출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는 연도에 원금과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
3. 공제 한도 : 근로자 본인·장애인특수교육비(전액), 취학전 아동·초·중·고등학생(연 300만원), 대학생(연 900만원), 교복구입비용(중·고등학생 1명당 연50만원), 현장학습비(초·중·고등학생 1명당 연 30만원)

일련번호 : 20250120-97547046

국 세 청
National Tax Service

• 본 증명서류는『소득세법』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•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: 기본(사용처별)내역
[신용카드]

(조회기간 : 2024년 01 ~ 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나형동	810114-*******

■ 전년도,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

(단위:원)

2023년 사용금액 합계	2024년 사용금액 합계
8,496,135	6,218,676

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

(단위:원)

일반	전통시장	대중교통	도서공연등	합계금액
5,774,873	17,400	396,080	30,323	6,218,676

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

(단위:원)

구분	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공제대상금액합계
신용카드	104-86-39742	농협은행 주식회사	일반	22,800
신용카드	120-81-54231	롯데카드 주식회사	일반	122,990
신용카드	214-81-37726	비씨카드 (주)	일반	5,216,971
신용카드	214-81-37726	비씨카드 (주)	전통시장	17,400
신용카드	214-81-37726	비씨카드 (주)	대중교통	343,480
신용카드	214-81-37726	비씨카드 (주)	도서공연등	30,323
신용카드	202-81-45602	삼성카드주식회사	일반	0
신용카드	202-81-48079	신한카드 주식회사	일반	0
신용카드	104-86-56659	하나카드 주식회사	일반	83,390

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2. 사용처 구분 : 일반사용분,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
(중고자동차 구매 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일련번호 : 20250120-97547046

국 세 청
National Tax Service

- 본 증명서류는『소득세법』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: 기본(사용처별)내역
[신용카드]

(조회기간 : 2024년 01 ~ 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나형동	810114-*******

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

(단위:원)

구분	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공제대상금액합계
신용카드	213-86-15419	현대카드주식회사	일반	7,700
신용카드	101-86-61717	(주) KB국민카드	일반	321,022
신용카드	101-86-61717	(주) KB국민카드	대중교통	52,600
신용카드	101-86-61717	(주) KB국민카드	도서공연등	0
인별합계금액				**6,218,676**

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2. 사용처 구분 : 일반사용분,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
(중고자동차 구매 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일련번호 : 20250120-97547046

국 세 청
National Tax Service

- 본 증명서류는『소득세법』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: 기본(사용처별)내역
[신용카드]

(조회기간 : 2024년 01 ~ 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나문영	520809-*******

■ 전년도,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

(단위:원)

2023년 사용금액 합계	2024년 사용금액 합계
6,496,320	5,539,430

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

(단위:원)

일반	전통시장	대중교통	도서공연등	합계금액
5,537,930	1,500	0	0	5,539,430

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

(단위:원)

구분	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공제대상금액합계
신용카드	104-86-39742	농협은행 주식회사	일반	4,557,430
신용카드	104-86-39742	농협은행 주식회사	전통시장	1,500
신용카드	213-86-15419	현대카드주식회사	일반	980,500
신용카드	213-86-15419	현대카드주식회사	전통시장	0
인별합계금액				5,539,430

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2. 사용처 구분 : 일반사용분,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
(중고자동차 구매 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일련번호 : 20250120-97547046

국 세 청
National Tax Service

- 본 증명서류는『소득세법』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: 기본(사용처별)내역
[신용카드]

(조회기간 : 2024년 01 ~ 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강영숙	541014-*******

■ 전년도,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

(단위:원)

2023년 사용금액 합계	2024년 사용금액 합계
742,940	1,060,980

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

(단위:원)

일반	전통시장	대중교통	도서공연등	합계금액
1,060,980	0	0	0	1,060,980

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

(단위:원)

구분	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공제대상금액합계
신용카드	104-86-39742	농협은행 주식회사	일반	1,060,980
인별합계금액				1,060,980

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2. 사용처 구분 : 일반사용분,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
(중고자동차 구매 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일련번호 : 20250120-97547046

국 세 청
National Tax Service

- 본 증명서류는『소득세법』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: 기본(사용처별)내역 [직불카드 등]

(조회기간 : 2024년 01 ~ 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나형동	810114-*******

■ 전년도,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

(단위:원)

2023년 사용금액 합계	2024년 사용금액 합계
4,125,351	5,338,253

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

(단위:원)

일반	전통시장	대중교통	도서공연등	합계금액
5,214,484	62,100	0	61,669	5,338,253

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

(단위:원)

구분	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공제대상금액합계
직불카드 등	524-86-01528	네이버파이낸셜 주식회사	일반	0
직불카드 등	104-86-39742	농협은행 주식회사	일반	0
직불카드 등	104-86-58491	롯데멤버스 주식회사	일반	0
직불카드 등	120-81-54231	롯데카드 주식회사	일반	484,920
직불카드 등	120-81-54231	롯데카드 주식회사	전통시장	0
직불카드 등	116-81-05556	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	일반	0
직불카드 등	214-81-37726	비씨카드 (주)	일반	69,822
직불카드 등	202-81-45602	삼성카드주식회사	일반	2,400
직불카드 등	102-82-04083	상호저축은행중앙회	일반	0

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2. 사용처 구분 : 일반사용분,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(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
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일련번호 : 20250120-97547046

국 세 청
National Tax Service

- 본 증명서류는『소득세법』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: 기본(사용처별)내역 [직불카드 등]

(조회기간 : 2024년 01 ~ 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나형동	810114-*******

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

(단위:원)

구분	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공제대상금액합계
직불카드 등	102-82-04083	상호저축은행중앙회	전통시장	0
직불카드 등	202-81-48079	신한카드 주식회사	일반	0
직불카드 등	563-81-00723	엔에이치엔페이코 주식회사	일반	4,090,009
직불카드 등	563-81-00723	엔에이치엔페이코 주식회사	전통시장	62,100
직불카드 등	563-81-00723	엔에이치엔페이코 주식회사	도서공연등	25,169
직불카드 등	101-86-79070	주식회사 우리카드	일반	0
직불카드 등	220-81-83676	주식회사 지마켓	일반	3
직불카드 등	375-88-00197	주식회사 카카오뱅크	일반	105,000
직불카드 등	527-88-00686	주식회사 카카오페이	일반	10,550
직불카드 등	116-81-29539	케이비증권 주식회사	일반	0
직불카드 등	116-81-29539	케이비증권 주식회사	도서공연등	0
직불카드 등	101-82-03970	한국산업은행	일반	439,700
직불카드 등	213-86-15419	현대카드주식회사	일반	2,480
직불카드 등	101-86-61717	(주) KB국민카드	일반	0
직불카드 등	101-86-61717	(주) KB국민카드	도서공연등	36,500

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2. 사용처 구분 : 일반사용분,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(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
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일련번호 : 20250120-97547046

국 세 청
National Tax Service

- 본 증명서류는『소득세법』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: 기본(사용처별)내역 [직불카드 등]

(조회기간 : 2024년 01 ~ 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나형동	810114-*******

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

(단위:원)

구분	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공제대상금액합계
직불카드 등	120-88-01280	(주) 비바리퍼블리카	일반	9,600
인별합계금액				**5,338,253**

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2. 사용처 구분 : 일반사용분,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(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
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일련번호 : 20250120-97547046

국 세 청
National Tax Service

- 본 증명서류는『소득세법』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: 기본(사용처별)내역 [직불카드 등]

(조회기간 : 2024년 01 ~ 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나문영	520809-*******

■ 전년도,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

(단위:원)

2023년 사용금액 합계	2024년 사용금액 합계
8,927,980	9,088,141

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

(단위:원)

일반	전통시장	대중교통	도서공연등	합계금액
9,086,641	1,500	0	0	9,088,141

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

(단위:원)

구분	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공제대상금액합계
직불카드 등	104-86-39742	농협은행 주식회사	일반	7,356,590
직불카드 등	104-86-39742	농협은행 주식회사	전통시장	1,500
직불카드 등	214-81-37726	비씨카드 (주)	일반	1,730,051
인별합계금액				9,088,141

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2. 사용처 구분 : 일반사용분,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(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
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일련번호 : 20250120-97547046

국 세 청
National Tax Service

- 본 증명서류는『소득세법』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: [현금영수증]

(조회기간 : 2024년 01 ~ 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나형동	810114-*******

■ 전년도,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

(단위:원)

2023년 사용금액 합계	2024년 사용금액 합계
5,001,437	14,852,053

■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집계

(단위:원)

일반	전통시장	대중교통	도서공연 등	주택임차료 거래	합계금액
14,786,686	13,500	0	51,867	0	14,852,053

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,
 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(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※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(홈택스> 상담·불복·제보>현금영수증·신용카드 미발급/발급거부>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) 또는 세무서(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)에 신청
2. 국세청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는 주택임차료(월세) 거래분은 일반거래금액으로 계산함

일련번호 : 20250120-97547046

국 세 청
National Tax Service

- 본 증명서류는『소득세법』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: [현금영수증]

(조회기간 : 2024년 01 ~ 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나형동	810114-*******

■ 현금영수증 사용내역

(단위:원)

구분	종류	월별 공제대상금액				공제대상금액
		01월	02월	03월	04월	
		05월	06월	07월	08월	
		09월	10월	11월	12월	
현금영수증	일반거래	5,211,896	612,484	42,360	120,700	14,786,686
		7,589,608	62,860	108,300	53,400	
		201,935	6,245,800	-6,120,720	658,063	
현금영수증	전통시장거래	0	4,000	0	0	13,500
		0	9,500	0	0	
		0	0	0	0	
현금영수증	도서.공연비등거래	0	37,240	0	0	51,867
		0	0	0	0	
		4,627	5,000	0	5,000	

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,
 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(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※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(홈택스> 상담·불복·제보>현금영수증·신용카드 미발급/발급거부>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) 또는 세무서(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)에 신청
2. 국세청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는 주택임차료(월세) 거래분은 일반거래금액으로 계산함

일련번호 : 20250120-97547046

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

- 본 증명서류는『소득세법』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: [현금영수증]

(조회기간 : 2024년 01 ~ 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나문영	520809-*******

■ 전년도,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

(단위:원)

2023년 사용금액 합계	2024년 사용금액 합계
27,800	3,400

■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집계

(단위:원)

일반	전통시장	대중교통	도서공연 등	주택임차료 거래	합계금액
3,400	0	0	0	0	3,400

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,
 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(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※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(홈택스>상담·불복·제보>현금영수증·신용카드 미발급/발급거부>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) 또는 세무서(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)에 신청
2. 국세청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는 주택임차료(월세) 거래분은 일반거래금액으로 계산함

일련번호 : 20250120-97547046

국 세 청
National Tax Service

- 본 증명서류는『소득세법』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: [현금영수증]

(조회기간 : 2024년 01 ~ 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나문영	520809-*******

■ 현금영수증 사용내역

(단위:원)

구분	종류	월별 공제대상금액				공제대상금액
		01월	02월	03월	04월	
		05월	06월	07월	08월	
		09월	10월	11월	12월	
현금영수증	일반거래	0	0	0	0	3,400
		0	1,900	0	0	
		0	0	0	1,500	

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,
 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(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
※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(홈택스> 상담·불복·제보>현금영수증·신용카드 미발급/발급거부>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) 또는 세무서(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)에 신청

2. 국세청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는 주택임차료(월세) 거래분은 일반거래금액으로 계산함

일련번호 : 20250120-97547046

국 세 청
National Tax Service

- 본 증명서류는『소득세법』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: 기본내역
[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]

(조회기간 : 2024년 01 ~ 12월)

■ 차입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나형동	810114-*******

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내역 (단위:원)

취급기관 (사업자번호)	대출종류 (상품명)	최초차입일 최종상환 예정일	상환 기간	주택 취득일	저당권 설정일	연간합계액	소득공제 대상액
		차입금	고정금리 차입금	비거치식 상환차입금	당해년 원금상환액		
주식회사 아이엠뱅크 (502-81-07740)	해당없음 (여신-주택자금-주택담보-(DGB장기모기지론)-DGB하이브리드모기지)	2023-09-15 2073-09-15	50년	2023-09-15	2023-09-15	10,383,770	10,383,770
		270,000,000	0	270,000,000	12,350,000		
(주) 우리은행 (201-81-02819)	해당없음 (우리아파트론[일반]가계주택자금대출)	2020-04-27 2055-04-27	35년	2020-04-27	2020-04-27	4,961,863	4,961,863
		190,666,476	190,666,476	190,666,476	6,285,708		

1. 공제 대상 :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(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,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)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(2023.12.31. 이전은 3억원 이하, 2014.1.1.~2018.12.31. 4억원, 2019.1.1.~2023.12.31. 5억원)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도시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

※ 주택소유자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하며, 본인 명의 차입금이 공제대상임

2. 공제한도 :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,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와 합하여 차입연도, 상환기간 및 상환종류 등에 따라 연 600만원, 800만원, 1000만원, 1500만원, 1800만원, 2000만원 한도

일련번호 : 20250120-97547046

국 세 청
National Tax Service

- 본 증명서류는『소득세법』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: 기본(지출처별)내역[기부금]

(조회기간 : 2024년 01~12월)

■ 기부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나형동	810114-*******

■ 기부금 지출내역 (단위:원)

사업자번호	단체명	기부유형	기부금액 합계	공제대상 기부금액	기부장려금 신청금액
221-83-00013	강원특별자치도청	고향사랑기부금	100,000	100,000	0
인별합계금액					**100,000**

※ 기부금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기부금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므로 조회기간을 선택하여 조회한 경우에도 1년 전체 기부금액이 조회됩니다.

1. 공제 대상 :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(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

※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'정치자금기부금'과 '우리사주조합기부금'은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
일련번호 : 20250120-97547046

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

- 본 증명서류는『소득세법』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